

## <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의무 대상자 확대 안내 표>

구분	실적보고 작성대상	제출 보고서	올바로시스템 의무 대상 여부		
			기존	개정시행 ('23.5.31.)	
일반 · 지정	·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자	-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-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-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(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) -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	비대상	대상	
	·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(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 하되, 중간가공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) ·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(중간가공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)	-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	비대상	대상	
	·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(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2)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)	-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	비대상	비대상	
	· 폐기물처리업자	· 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	- 폐기물 수집·운반 실적보고서	비대상	대상
		· 폐기물 중간처분업자	-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	비대상	대상
		· 폐기물 최종처분업자	-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-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(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)	비대상	대상
		· 폐기물 종합처분업자	- 폐기물 수집·운반 실적보고서 -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-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	비대상	대상
		· 폐기물 재활용업자	-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	비대상	대상
	· 폐기물처리 신고자	-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	비대상	대상	
	건설	· 배출신고자	-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	대상	대상
· 배출자		-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	대상	대상	
· 처리업자		· 중간처리업자	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	대상	대상
		· 수집·운반업자	- 순환골재 생산·판매 실적보고서	대상	대상
			-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 실적보고서	대상	대상
생활	·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	-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	비대상	비대상	